제303회 임시회
2011. 9. 30.(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3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1년 9월 9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9월 26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성수)

가. 제안이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서울사무소" 설치

○ 소관사무의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소장을 둠

○ 국회·정당,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 소관사무 수행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개정조례안은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며,
- 소관사무의 총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소장을 두며,
- 국회·정당,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의 소관사무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회 및 정당,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도정주요 시책추진 등 을 위해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조직개편이 민선5기 출범이후 2010년 8월과 12월, 2011년 3월과 7월에 이어 금번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지나치게 잦은 측면이 있는바, 향후 조직개편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의 정원운용 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다음에 “제8절 충청북도서울사무소” 를 삽입하여,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6조의3(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신 설>	제8절 충청북도서울사무소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6조의3(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